

방위비분담금과 국가재정법 발제 토론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률 산정과 관련하여—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 국방부 집계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83.1%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하여 집계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접 및 간접 지원비용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원 총액은 5.4조원에 달한다. 미국 정부가 자기 예산에서 지출한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은 1.1조원(9.3억 달러)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하면 83.1%(2015년 기준)가 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을 42%(주한미군사령부 발행 「2018 전략다이제스트」)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터무니없게 낮게 계산된 것임을 입증해준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을 발표해 왔으나 그 이후 발표(집계작업)를 중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 집계가 대미 협상력 강화와 국방정책 수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수차례 걸쳐 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처사이자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태도다. 만약 국방부가 이런 지원 내역 집계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왔다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내역 집계 및 발표를 오래 전에 중단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경비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매년 국방백서에 수록해 온 점에 비춰보더라도 우리 정부(국방부, 외교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 및 간접지원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국방백서에도 수록해야 할 것이다.

2. 평화통일연구소의 집계방식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85.7%

평화통일연구소는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해 왔다. 그것은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접 및 간접지원 내역을 집계하여 발표하였지만 미군 기지이전비나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데다 토지임대료 평가와 같이 저평가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는 집계마저도 국방부는 2010년 이후부터 중단하였다. 평화통일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집계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 및 간접지원(합계 3.4조원)은 오늘 국방연구원 발제에서

발표된 직접 및 간접지원(합계 5.4조원)보다 2조원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방부 이외 다른 부처예산인 반환공여구역토지매입 및 기지주변정비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예산정보의 제약에 따른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국방부의 의뢰로 집계된 2015년 기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 및 간접 지원 현황은 과거 국방부 집계(2010년) 때보다 범위(항목)를 넓혀 좀 더 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되었다. 가령 미군기지이전비 7169억원, 기지주변정비비(평택지원 등) 1조4542억 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1조3442억 원 등이 새로 집계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집계에는 미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간접지원)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토지임대료 평가가 형편없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 국방부는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또 임대료를 전용공여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 기타 공여지는 2.5%로 차별을 두었다.

이에 평화통일연구소는 누락되어 있는 미군탄약저장시설비 1237억원을 포함하였다. 또 토지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우리 국방부도 1988~1993년까지는 실거래가의 10%를 임대료로 평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6%를 임대료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국에 걸쳐 있는 주한미군기지(주변)의 실거래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통일연구소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10%, 기타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이 기준은 1994~1998년에 국방부가 적용한 기준임)를 적용해 토지임대료를 재평가하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토지임대료 평가는 국방부의 임대료 평가 7105억 원의 두 배인 1조4210억 원이 된다. 따라서 평화통일연구소가 계산한 한국의 직접 및 간접지원은 국방부 집계보다 8342억 원(토지임대료 평가 추가분 7105억 원과 탄약저장시설비 1237억원의 합) 더 많은 6조2906억원이 된다. 2015년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은 1조526억원이다. 이로부터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6조2906억원 \div (1조526억원 + 6조2906억원) \times 100\% = 85.7\%$ 가 된다.

3.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보다 5.7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을 공평한 분담의 잣대(기준)로 삼고 있다. 이 분담률은 ‘한국의 지원분 \div (미국의 부담분 + 한국의 지원분) $\times 100\%$ ’의 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런 계산방식은 원래 미국방부가 고안해 낸 것으로 미국 자신에게 유리하고 한국과 같은 주둔국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위 계산식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부담분(지원액)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1:1 대응시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부담분과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합친 것을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 한국의 부담분이 몇 %인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담률 계산방식은

한국이 아무리 많이 분담하더라도 100%를 넘길 수 없다. 즉 이런 계산방식은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액을 최대한 낮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부담) 실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한국의 지원액을 맞비교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직간접지원 총액은 5.4조원이며, 토지임대료 평가 추가분 7105억 원과 탄약저장시설비 1237억원을 합하면 6.3조원이 된다. 2015년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은 9.3억달러(1.1조원)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려 주한미군의 주둔비보다 5.7배 많은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직접지원(4.4조원)만 갖고 계산하더라도 한국은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의 4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이외 다른 모든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점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보다 5.7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미국 퍼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보다 5.7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공평한 분담을 한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온당한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협상목표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기를 기대한다.